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258
------	------

2024. 12. 1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2.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가. 제안이유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여 국제도시 분야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으로 변경하고,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안 제5조)

III.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국제도시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의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제출됨.

2.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현황 및 전문대학원 전환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은 지난 2013년 특수대학원으로 설립되어 현재 한국인 대상 3개 학과(글로벌건설학과, 첨단녹색도시개발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위한 4개의 석사학위 프로그램 및 2개의 비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한국인 233명과 외국인 547명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하고 현재 한국인 60명과 외국인 118명이 재학 중임.
- 한편 최근 공적개발원조(ODA)¹⁾의 규모 확대와 해외건설 계약의 증가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 대학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어 서울시로부터 실무 중심 교육과 글로벌 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시립대는 동 대학원을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고²⁾

1)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돈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 하는 것을 말하며, 2024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총 6조 2,629억원으로 2023년 대비 31.3% 증가했으며, 2025년도에도 8.5% 늘어난 6.8조원으로 증액됨.

2)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에 따르면,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설치 가능한 반면, 전문대

타 대학원 학생들과의 수업 공유가 제한적이며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구조적 제약³⁾이 있는 특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설치와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⁴⁾이 가능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학원)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학원을 두며,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학원)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전문대학원으로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u>법학전문대학원</u>	2. ----- ----- <u>법학전문대학원</u> , <u>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u>
3. 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특수대학원으로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	3. ----- ----- ----- ----- <u>도시보건대학원</u>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비교 >

구분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목적	전문 직업분야의 전문가 양성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수업형태	주간(또는 야간)	야간(계절 또는 주간)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없음)
학위수여	전문학위 또는 학술학위	전문학위
교육내용	실천적 이론 및 실무위주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교육
배출인력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 양성	직업인의 계속 교육

○ 이를 통해 시립대는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과정 1개 정원을 박사과정으로

학원은 석사 및 박사과정 모두를 설치할 수 있음.

- 3)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 중심의 제한된 학위 수여, 야간 또는 계절 수업의 형태 제한 등 구조적으로 전문대학원에 비해 더 협소하고 제한적인 교육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음.
- 4) 증가추세인 도시·건설·환경·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영어과목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한계로 수업공유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전문대학원 전환 시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영어수업을 타 일반대학원 학생 및 교환학생에게 원활히 제공이 가능함.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동 대학원의 영어 수업을 타 일반대학원 학생 및 교환학생과 공유함으로써 시립대 내의 다른 교육과정과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계획 >

설치학과명	입학정원(수업연한)			총 정원(명)
	석사과정(명)	박사과정(명)	계(명)	
글로벌건설학과	10	0	10	30
첨단녹색도시개발학과	10	0	10	
국제개발협력학과	9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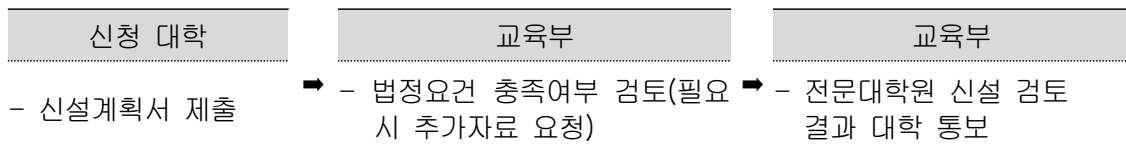
- 기존 3개 학과 틀과 전체 30명 TO 유지*

-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 TO 1개를 박사 TO 1개로 전환**

* ** '24.4. 교육부 방침 상 학사, 석사, 박사과정 입학정원 간 1:1:1 비율로 조정 가능

- 참고로 대학원 유형의 분류 체계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고등교육법」⁵⁾ 제29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원 신설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인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을 매년 공시하고 있음.
- 그리고 동 기준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교원 확보율과 교사 시설 확보율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전문대학원 설치 절차 >



5)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전문대학원 신설 요건 >

① 교원확보 원칙 및 기준

- 전문대학원 소속 전임 교원확보 원칙(1/3이내 겸임교원 등 배치 가능)
- 다만, 신설분야 교원 인력 부족, 여건에 따른 신임 교원 총원 곤란 등의 경우에는 타 학부(대학원) 교원 겸직(1/3 범위 내)으로 확보 가능

< 관련 규정 및 기준 >

- (교원확보율 산출 기준) 「대학설립·운영 규정」제6조제2항제2호⁶⁾ 및 별표5⁷⁾
- (교원확보 시점) 신설 학년도 기준 교원의 1/2이상, 차년도(편제완성연도) 완전 확보
- (학생 편제정원 기준) 편제정원(입학정원) 100명 미만일 경우 100명 기준 적용⁸⁾
- (교원연구 실적) 박사과정 신설 시 7명 이상 관련 분야 교원 확보

② 교사시설 확보 원칙 및 기준

- 전문대학원은 교사시설을 별도 확보하되, 필요시 타 대학원 등의 교사(기본시설) 공동 활용도 가능

< 관련 규정 및 기준 >

- (교사확보율 기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3
- 전문대학원 교사(기본시설)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 인문·사회(12),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14)
- (학생 편제정원 기준) 편제정원 100명 미만일 경우 100명 기준 적용

- 이에 따라 시립대는 지난 2024년 9월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교원 및 교사시설 확보 기준을 충족하였는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원 분류 체계 및 교육부의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있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대학설립·운영 규정」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의 학생수

7)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5 교원산출기준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8

8)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입학정원이 30명이므로, 교원 확보율 산정 시 100명 이하 기준을 적용함.

<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원 및 교사 확보 현황 >

구 분	확보 기준 (A)* ¹	확보 ₂ (B)*	확보 계획				계 (E=B+C+D or B+C)	적합 여부* ⁴	
			향후 계획* ³						
			'24.10.1	'25.3.1 (C)	'25.10.1	'26.3.1 (D)			
교원 (명)	교원 (구, 전임교원)	7	7					7	적합
	겸임 등	0	6					6	
	계	7	13					13	
교사(㎡)	72	753.45					753.45	적합	

* 1 확보기준 : 교원은 학생 총정원(편제정원) 100명 미만인 경우 100명 기준을 적용(교원확보 최소기준 : 인문사회계열 6명, 예체능/공학/자연계열 8명) / 교사는 학위과정별 편제정원× 계열별 교사면적(인문사회 12㎡, 공학/자연과학/예체능 14㎡)

* 2 확보현황 : '24.8월 현재 확보한 교원 수 및 면적을 기재

* 3 확보계획: 교원은 '24.10.1.기준, '25.3.1.기준, '25.10.1.기준, '26.3.1.기준으로 구분하여 신규 채용계획으로 작성하고, 교사는 '25.3.1.기준 확보 가능 면적으로 작성

* 4 적합 여부 판정 : 교원은 '26.3.1.기준/ 교사는 '25.3.1.기준

* 5 겸임교원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8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여 국제도시 분야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으로 변경하고,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9. 12. ~ 10. 2.)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한문기(☎ 2133-673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을 “도시보건대학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대학원)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학원을 두며,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p> <p>1. (생 략)</p> <p>2.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전문대학원으로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u>법학전문대학원</u></p> <p>3. 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특수대학원으로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u>국제도시과학대학원</u>, <u>도시보건대학원</u></p>	<p>제5조(대학원)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법학전문대학원</u>, <u>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u></p> <p>3. -----</p> <p>-----</p> <p>----- <u>도시보건대학원</u></p>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행정6급 한문기(☎ 2133-6739)